

투자신탁설명서 변경 공시

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2조, 동법시행령 제101조 내지 제10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 다 음 -

1. 변경대상펀드 : 한화 리살 유렵리츠재간접 재간접투자신탁 제1호
2. 투자설명서 변경 주요 내용

변경전	변경후
1. 구(舊) 투자설명서	1. 모범투자설명서로의 변경 2. 투자신탁 수익률 갱신

※ 자세한 변경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변경사유 : 모범투자설명서로의 변경

4. 투자설명서변경 시행일 : 2008년 6월 11일

※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회사, 판매회사 본점 및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변경된 약관 및 투자설명서는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2008년 6월 11일
한화투자신탁운용 (주)